#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**444**  제출연월일: 2019년 2월 1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#### 1. 제안이유

서울형 통합운영학교 도입에 따라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

#### 2. 주요내용

통합운영학교의 학부모회 통합·운영 근거 마련(안 제3조제2항 신설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[별첨 6]

- o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
- o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별첨 2)
- 다. 협 의 : 감사관, 정책·안전기획관과 협의완료

라. 기 타

- o 신·구조문 대비표: [별첨 1]
- o 입법예고(2018.11.21.~12.11.) 결과: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[별첨 3]
- o 부패영향평가: 평가대상 제외 [별첨 4]
- o 성별영향분석평가: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[별첨 5]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·운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【별첨 1】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 (생 략)	제3조(학부모회의 설치) ① (현행
	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② 「초・중등교육법」 제30조
	제1항에 따라 학교를 통합・운
	영하는 학교는 학부모회를 통합
	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#### 【별첨 2】

##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#### 1. 비용발생 요인

○ 해당 없음

#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'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'에 해당

#### 3. 미첨부 사유

○ 서울형 통합운영학교의 학부모회 통합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으로 이로 인한 비용 발생 없음

#### 4. 작성자

○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수정(02-3999-471)

### 【별첨 3】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(제14조 관련)		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견	조 치 내 용		
기선제할까	해당 없음	4: A 41 &		

###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

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



#### 서울특별시교육청



수선 참여협력담당관

(경유)

제목 부패영향평가 결과 앞림(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)

- 1. 관련
  - 가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」
- 나. 참여혁력담당관-12078(2018. 11. 23.)
- 2.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」제3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설치, 조작운영, 업무분장,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 등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.
- 3. 따라서 귀 과에서 의뢰한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.
- 불임 1.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1부.
  - 2.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주무관

박동환

<sup>첧검흥광담당사무</sup>합금석 감사관

12/17 이민종

현조자

시행 감사관-14898

( 2018. 12. 17. ) 접수 참여협력당당관-13209 ( 2018. 12. 17. )

우 08178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(신문로2가,서울특별시교육청) 전화 02-3999-149 /전송 02-3999-732 / pdh@sen.go.kr / http://www.sen.go.kr

2013.12.18 15:01 찬여협력담당판 박수정

### 【별첨 5】

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						
관리번호	2018A서울교육022					
정 책 명	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			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
소관부서	부서명	참여협력담당관				
	담당자명	박수정	전화번호	02-3999-471		
	기관명	서울특별시교육청				
담당부서	부서명	정책안전기획관				
	담당자명	박혜주	전화번호	02-3999-315		
체크리스트	2018년 11월 29일					
제출일자						
완료(제외) 통보일자	2018년 11월 29일					

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18년 12월 04일

### 관계법규

### ■ 초 • 중등교육법

제30조(학교의 통합·운영) ① 학교의 설립자·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역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·중학교, 중학교·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시설·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2. 3. 21.]

### ■ 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

- 제56조(학교의 통합운영) ①학교의 설립·경영자는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의 규모, 학생의 통학거리 및 당해 통합운영대상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②통합운영학교의 시설·설비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통합운영학교에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 되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, 학교의 설립·경영자 는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직원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0. 12. 27., 2013. 2. 15.〉
- ④ 제3항에 따른 교직원 배치기준, 교육과정의 운영, 예산 편성·운영, 행정적·재정적 지원, 사무관리나 <u>그 밖에 통합운영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</u> 관할청이 정한다. 〈개정 2010. 12. 27.〉

[제목개정 2013. 2. 15.]